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접수		년		월 일			기관 확인	각종 통지		
접	千	제		호	처리인					
					부동	산의 3	표시			
- 1	اداه		. 1 61	41	13 01 01					
능기· 	원인 	[과 그	L 연월	일	년 월 일					
등 >	7] 9	의 5	루 적		등기명의인 표시변경					
변 변	경	사	항							
그님 성 명]	주민등록번호 고 * (* 게 기)						
구분			ō 호- 명칭	I	(등기용등록		주	소 (소 재 지)		
신										
청										
인										



뜽	록	면	허	세	급					원
지	방	亚	육	세	급					원
세	액		합	계	급					원
					급					원
등 기] 신	청	수 수	료	납부번호	. :				
					일괄납부	· :	4	건		원
				첨	부	서	면			
	신청수 장 증명 ^소 우	·수호 1(상 	수필확인 로 영수 세) 청인	필확 ^c		〈기타〉 월 ⓒ	일	년화 : (전화:))
	(<u>1</u> .		내리					(선와: 귀중)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-1	人	ل	월	일	-1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 	宁	제		호]처	리 9		

① 부동산의 표시

-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
-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 1층 100㎡
 2층 100㎡

이 상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역	2017년 4월 3일 개명	
③ 등 기 의 목 적	등기명의인 표시변경	
④ 변 경 사 항	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"이대 ^학 "이을남"으로 변경	백"을
구분 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
5		
신		구 서초대로88길
이 을 남 ^청	700101-1234567 10(서초동)	
인		



		- 6
⑥ 등 록 면 허 세	그	12,000원
⑥ 지 방 교 육 세	크	2,400 원
⑦ 세 액 합 계	그	14,400원
	급	6,000원
⑧ 등 기 신 청 수 수 료	납부번호 : 12 -	-12-12345678-0
	일괄납부 :	건 원
9	첨 부 서	면
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1 통 _{〈기타}	卦〉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약	' ' '	17
• 위임장	<u> </u>	
・기본증명서(상세)	1 통	

삭/행

2017년 5월 26일

①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

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

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란

등기기록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(저당권자, 전세권자, 임차권자 등)의 표시(성명 등)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벽지층 사용하고, 벽지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서에 서명응 하였음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토지(임야)는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 순으로, 건물은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구조, 종류, 면적 순으로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개명"으로, 연월일은 법원의 개명 허가 일자를 기재합니다. 법인의 경우 "상호변경"으로, 연월일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일을 기재합니다.

(예) ○년 ○월 ○일 개명, ○년 ○월 ○일 상호변경

③ 둥기의 목적란

"등기명의인 표시변경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변경사항라

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.

(예)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"○○○"을 "○○○"으로 변경

⑤ 신청인란

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변경 후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합니다. 그러나



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⑥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⑦ 세액합계라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⑧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④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⑨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⑩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기본증명서(상세)

개명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く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기본증명서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